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682
----------	-----

2019. 9. 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5. 24. 김인제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 2019. 5. 30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9. 9. 3. 상정·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인제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 건축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건축문화제 개최, 건축상 선정, 민관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건축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건축문화사업의 정의, 건축문화제 개최시기와 기본방향, 관련위원회 설치,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건축문화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성숙된 건축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함.

2. 주요골자

- 건축문화사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제, 서울특별시 건축상,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건축문화사업의 개최시기, 기본방향, 시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함(안 제3조 ~ 제5조)
-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1조)
- 건축문화사업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사업에 참여한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 ~ 14조)
- 시장은 건축문화사업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Ⅲ.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례안 제안배경

- 이 제정조례안은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 건축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건축문화제, 건축상,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건축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9년 5월 24일 김인제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5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이는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축문화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축문화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성숙된 건축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건축문화사업의 정의, 건축문화제 개최시기와 기본방향, 관련위원회 설치,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

□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이 제정조례안은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건축문화사업”을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제, 서울특별시 건축상,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건축문화사업의 지향점으로서 시민참여 확대, 국내외 건축문화 축제와의 교류·협력 확산, 관련 공공-민간 단체와 기간 간 교류·협력 체계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둘째,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은 서울건축문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조직·인력 및 예산확보의 노력을 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건축문화제, 건축상의 선정·시상, 민간협력사업의 개최 시기, 시행주체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셋째, 시장은 건축문화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 ‘건축문화사업 진흥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건축문화사업의 운영·실행계획, 총감독 선임, 공모계획, 민관협력사업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또한 위원의 구성과 자격, 임기,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 7조~11조).

- 넷째, 건축문화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성과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다섯째, 건축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민관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의 책무로서 사업계획서, 실적보고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참여한 전문가에게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5조).

□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안 제1조 및 제3조)

- 20세기 서울은 급속한 인구와 경제의 성장을 겪으며 부족한 주택과 인프라를 공급해왔음. 2000년대에 들어 인구성장은 안정세를 접어들었고, 1인당 GDP는 3만불을 넘었음. 이제 건축에 대한 인식도 서울은 양적 공급을 위한 '건설'을 넘어 문화로서 '건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겠음.

○ ‘서울 건축상’은 1979년부터 ‘건축문화를 창달하고 도시의 미관을 증진하며,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당초에는 관심도 부족하고 출품작도 많지 않아 시상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였으나, 2018년 제36회 서울시 건축상 공모에는 116건이 접수되어 총 19팀을 수상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인 성과를 내었음.

○ ‘서울 건축문화제’는 2009년부터 시행한 행사로 ‘서울 건축상’의 시상식과 전시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포함한 행사로 확대하여 2018년 제10회를 개최하였음. 최근 2017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울의 건축문화 위상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최근 ‘건축상 시상 및 대학생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한 건축문화제 행사의 방문객 수가, 행사개최 기간인 6~11일내 2.5~4만 정도에 이르러 건축문화의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붙임1 참조).

○ ‘민관협력형 활성화사업’은 그 대상을 일반인, 대학생, 중·고등학생으로 차별화하고, 추진 내용도 건축디자인, 영화, 사진 등으로 다양화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제공 함으로써 ‘문화’로써 건축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2019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수요자	2019 행사명	주 최(개최시기)	서울시 역할(협력사항)	지원금액	지원현황	담당
대학생	제8회 대학생건축과연합축제	대학생건축과연합회 (1월~5월)	서울특별시시장상 후원 대관지원, 교육(강연), 홍보	10,000	2015~ 지속지원	건축 정책팀
일 반	제11회 건축영화상영회	대한건축사협회 (10월~11월)	서울시 명칭 후원 및 사안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	30,000	2016 /2017	
	건축포럼·토론회 등 개최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연중)	서울시 직접 추진	90,000	2018~ 직접추진	
중·고 등학생	제5회 중·고등학생 건축사진공모전	서울특별시건축사회 (9월~10월)	서울특별시시장상 후원 교육(강연), 홍보(교육청 등)	10,000	2015~ 지속지원	녹색 건축팀
일 반	제4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좋은집 찾기(공모)	서울특별시건축사회 (9월~10월)	서울특별시시장상 수여 자치구 순환전시, 홍보	10,000	2016~ 지속지원	

- 이 같은 서울시의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단계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 제정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됨.

나. 위원회 운영

- 안 제6조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는 건축 문화사업과 관련한 실행계획, 공모계획, 민관협력사업 지원계획 등을 심의, 자문하여 건축문화사업의 체계적 기획과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 안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유사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겸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아울러 전문적 식견을 가진 유능한 위원의 경우 이미 관련 분야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해당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기 보다 기존 위원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유능한 위원의 원활한 섭외와 효율적 위원회 운영 취지로 이해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인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82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 (1명)

찬 성 자 : 신정호, 이영실, 김화숙, 이경선,
노식래, 김종무, 채인묵, 장상기,
문영민, 김혜련, 김태수, 이현찬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서울시는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 건축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건축문화제 개최, 건축상 선정, 민관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건축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건축문화사업의 정의, 건축문화제 개최시기와 기본방향, 관련위원회 설치,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건축문화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성숙된 건축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함.

2. 주요골자

- 가. 건축문화사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제, 서울특별시 건축상,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건축문화사업의 개최시기, 기본방향, 시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함(안 제3조 ~ 제5조)
- 다.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1조)
- 라. 건축문화사업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마. 사업에 참여한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 ~ 14조)
- 바. 시장은 건축문화사업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를 위한 건축문화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축문화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제, 서울특별시 건축상,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등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문화행사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제”란 서울의 도시공간과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건축문화 행사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건축상”이란 서울의 건축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에게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3.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이란 건축문화의 진흥 및 개선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건축문화사업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문화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2. 국내외 다양한 건축문화축제와 교류 및 협력

3. 건축문화 육성을 위한 서울시 및 공공기관·민간기업·대학·관련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 구축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조직·인력 및 예산확보를 통해 서울건축문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개최시기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매년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제(이하 “서울건축문화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건축문화제와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상(이하 “서울시 건축상”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시상하며, 서울시 건축상의 세부 운영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이하 “민관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사업은 연 1회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

제 2 장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축문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건축문화사업의 운영 및 실행계획

2. 서울 건축문화제 총감독 선임
 3. 서울시 건축상 공모계획
 4. 민관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건축문화사업 업무담당 과장 및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건축문화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서울특별시장의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집

행위위원회와 세부사업별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의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건축문화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건축문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사업내용 및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건축문화사업과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건축문화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지원 및 운영

제13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 정산, 감독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건축문화사업 평가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사업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건축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이번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개최시기) 및 제5조(개최시기 등) 및 제13조(사업의 지원),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및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3조(건축문화사업의 평가) 등 에서 비용 발생
- ※ 단, 같은 조례안 제5조(개최시기 등)의 경우, 해당사업을 서울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 아님
- 같은 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 추진사업(붙임 참고)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명	내 용	2019년 사업비
제5조(개최시기 등) 제13조(사업의 지원)	서울 건축문화제	건축문화축제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건축문화 진흥도모	297,000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건축계의 주요 화두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영세한 비영리 건축관련 단체와의 건축문화 활성화 협력 사업 추진	300,000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5년 동안 98백만원으로, 연평균 20백만원임

- 건축문화사업의 평가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사례(2018 「서울건축문화제」 사업 종합보고, 2018.12.18.)가 있어 나머지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의 소위원회로 대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운영하는 것을 전제
- 위원회 운영 횟수와 소요비용 등은 건축기획과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계함. 15명의 위원 중 내부위원은 2명으로 전제. 외부 위원 전체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여 반영
-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 회의건수 증가 등은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98백만원

- 총비용 =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운영 및 수당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운영 (제7조, 제15조)	19,500	19,500	19,500	19,500	19,500	97,500
	소계(b)	19,500	19,500	19,500	19,500	19,500	97,500
□ 총 비용(b-a)		19,500	19,500	19,500	19,500	19,500	97,500

○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운영비 = $\sum_{i=1}^5$ (연간 위원회 운영비용)_i

- 연간 위원회 운영비용 = 19,500천원

$$= 150\text{천원(참석수당)} \times 13\text{명} \times 10\text{회}$$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2명은 참석 수당 지급 비대상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 100천원(2시간 이내), 초과 5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담 당 관

사업평가팀장

예산분석관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이정수

한기백

☎ 02-2180-7952

e-mail : hophan@seoul.go.kr